

의정부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0가단1385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비즈담당변호사 김동완

변 론 종 결 2022. 1. 12.

판 결 선 고 2022. 3. 2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8. 2. 21. 접수 제175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12. 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D에게 대여금 150,000,000원을 최종 대출만기일 2020. 3. 7.로 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의 대표자였던 C는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이 대출만기일 이후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D과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510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9. 1. "D은 66,749,991원과 그 중 60,700,000원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C는 D과 연대하여 위 돈을 1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결정은 2020. 10. 27. 확정되었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C는 2018. 2. 20. C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8. 2. 21. 접수 제175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금융기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최종 대출만기일이 2020. 3. 7.인 점,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최종 대출만기일 다음 날 비로소 현실화되어 발생한 점 등 앞서 살펴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0. 28.로부터 1년 전에 C의 처분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C의 공동담보 부족, 나아가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이미 연대보증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결국 원고가 대출만기일 다음날인 2020. 3. 8.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C의 채무초과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99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C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피고는 증여가 아닌 실질적 유상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설령 실질적 유상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D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C의 위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3. D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F호 건물에 관하여 2020.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건물이 2,101,000,100원에 매각되었으나 위 매각대금이 다른 선순위 근저당권자 및 임금채권자 등의 채권에 우선 충당되었고 원고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 성립 이전인 2011. 3. 7. 채권최고액 19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자 H단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될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축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8. 2. 20.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468,967,4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가액에서 H단체의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9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로는 피고의 소유이고 C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적어도 피고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1996. 7.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C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또는 공유 관계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의 수익자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8. 2. 21. 접수 제175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태지영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의정부시 대 255.8㎡

2. 위 1. 지상건물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건물내역 : 세멘부록조 양기와지붕

단층주택

102.74㎡ 끝.

